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9. 9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기를 당초 2021학년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조기 시행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수업료 단계적 면제 적용시기 정비(부칙 제2조)
 - 고등학교 전학년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

5. 검토의견

- 당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2019. 8. 9. 「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면서, 수업료의 면제시기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.
 -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면제
 -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·3학년 수업료 면제
 -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수업료 면제
-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수업료를 면제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